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안번호	회의차수	회의일자	제 의 자
21	14	1996. 7. 18.	총 제 이 경 식

의안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개정

의결사항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제의관계 「한국은행법」 제7조
법규조항

제의취지 숙박업 및 식당업에 대한 여신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정부의 관광산업
육성시책을 뒷받침하는 한편 금융기관 자금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

30

35

(참고 1)

제의관계 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7조

①

(생 략)

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 운영,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

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 지시를 발할 수 있다.

④~⑥

(생 략)

(참고 2)

여신금지부문 완화방안

현행	완화방안
1. 토지의 매입 2. 세대당 100㎡초과 주택, 오피스텔, 스키장 및 유원지의 건설 및 매입과 콘도미니엄 매입 3. 여신금지업종 ○ 불건전오락기구 제조업 ○ 관광「호텔, 유 제외한 「호텔, 유과 감동급여관업 및 콘도미니엄업 -다만, 제주도소재 업소에 대한 시설자금과 관광단지, 관광특구 소재 호텔 및 감동급 여관업소 관광지소재 감동급여관업소에 대한 시설자금은 허용 ○ 건평 또는 대지 330㎡초과 식당업 -다만,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소재 식당업과 관광지소재 건평 330㎡이내이고 대지 660㎡를 초과하지 않는 식당업에 대한 시설자금, “좋은식단”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은 허용 ○ 주점업 ○ 다방업 ○ 전당업 ○ 부동산업 ○ 「텐스, 홈, 「텐스」교습소 ○ 전자오락실운영업 ○ 「텔스클럽」 ○ 골프장운영업 ○ 당구장운영업 ○ 도박장운영업 ○ 사우나탕, 터키방업 및 안마시술소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 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 숙박업에 대한 여신 전면 허용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전면 허용 (현행과 동일)

(불 입)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 1 조 ~ 제 8 조 (생 략) (신 설)	제 1 조 ~ 제 8 조 (현행과 동일) 부 칙 이 규정은 1996. 8. 1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자 명시
< 별 표 > 여 신 금 지 부 문	< 별 표 > 여 신 금 지 부 문	
1. ~ 2. (생 략)	1. ~ 2. (현행과 동일)	

현행		개정(안)		비고
3. 다음의 업종에 대한 여신		3. 다음의 업종에 대한 여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번호	업종명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번호	업종명	
3694중	불건전오락기구 제조업	3694중	(현행과 동일)	
551중	관광「호텔」을 제외한「호텔」업과 감동급여관업 및 콘도미니엄업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 1. 제주도소재 업소에 대한 시설자금 2.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소재 「호텔」 및 감동급여관업소에 대한 시설자금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저소득 감동급여관업소에 대한 시설자금	55104중	콘도미니엄업(다만, 제주도소재 업소에 대한 시설자금은 제외)	○ 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 숙박업에 대한 여신 전면 허용
5521중	건평 또는 대지 330㎡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 1.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2.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소재 식당업에 대한 시설자금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저소득 건평 330㎡이내이고 대지 660㎡를 초과하지 않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에 대한 시설자금 4.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	5521중	건평 또는 대지 330㎡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 1.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2.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3.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전면 허용

현행		개정 (안)		비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번호	업종명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번호	업종명	
5522	주점업	5522	(현행과 동일)	
55232	다방업	55232		
65929중	전당업	65929중		
70	부동산업 (다만, 공장건물 및 서민주택 임대업에 대한 여신과 「도·소매업진흥법」 제6조에 의한 시장개설자의 당해시장 임대업에 대한 시장선속 또는 중·개축자금은 제외)	70		
92191중	「댄스홀」, 「댄스」 교습소	92191중		
92193	전자오락실운영업	92193		
92431중	「헬스클럽」	92431중		
92434	골프장운영업	92434		
92437	당구장운영업	92437		
92496	도박장운영업	92496		
93092중	사우나탕업, 터키탕업 및 안마시술소	93092중		